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507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7. 6. 21. 접수 제46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1. “D은 원고에게 19,066,387원 및 그 중 4,843,849원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8958), 이는 2018.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5. 사망하였고, D은 망인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F, C, G)과 공동상속하였다(D의 법정상속분 2/11).
- 2) 그런데 D은 그 무렵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 상태

이 사건 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주택(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3,830만 원)에 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 구미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D은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D의 위 상속지분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이 사건 협의를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1) 피고의 남편이자 D의 아버지인 망인은 1976. 2. 2.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1976.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가족들(피고, D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 2) 1970년생인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8. 1. 6.경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와는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
- 3)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4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자녀들이 이 사건 협의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예는 드물지 않다. D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 역시 노모인 피고가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D의 채무관계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협의에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가령 D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목록

1. 포항시 남구 H 대 33평
2. 위 지상(도로명주소: 포항시 남구 D 세멘벽돌조 세멘와즙평가건주택 1층 건평 12평
8홉 2작, 부속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번호 1동 건평 3홉.
끝.

